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0. 26 선고 2022가단841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12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5. 2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. 5. 24. 접수 제82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 C는 원고에게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피고 C에 대해 5,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, 피고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으므로, 그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,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.

2. 판단

갑 1~4호증, 을 1~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, 그들 사이에 2021. 6. 16. 성립한 합의에 따라 그 대여금 채권이 이미 소멸한 사실을 알 수 있다(원고는, 그 합의가 피고 C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).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박광민

별지 목록

1. 1동건물의 표시

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 동

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아파트

1층 921.78㎡

2층 921.78㎡

3층 921.78㎡

4층 808.56㎡

5층 808.56㎡

6층 808.56㎡

지하 955.80㎡

전유부분의 표시

3층 호

철근 콘크리트조

84.42㎡

2.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 2210㎡2. 위 대 1317㎡3. 위 대 3276㎡4. 위 대 253㎡5. 위 대 119㎡6. 위 대 146㎡

대지권의 종류 : 1,2,3,4,5,6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,2,3,4,5,6. 7,321분의 44,744

- 이 상 -

